##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33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김상욱・김선교・조지연

박준태 • 박덕흠 • 김기현

최형두 · 김예지 · 이종배

서천호 · 성일종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과태료 규정은 한국조폐공사,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 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,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2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1항 중 "200만원"을 "500만원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0조(과태료) ① 제6조를 위반	제20조(과태료) ①		
한 자에게는 <u>200만원</u> 이하의	<u>500만원</u>		
과태료를 부과한다.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